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자의 특성과 재무상태 분석*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신청자를 대상으로

The Characteristics and Financial Status of the Users of the Debt Management Program of the Credit Counseling and Recovery Service

인천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교 수 성 영 애**
Dept. of Consumer & Child Studies, Univ. of Incheon
Professor : Sung, Young-A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financial status of credit delinquents utilizing the debt management program of the Credit Counseling and Recovery Service between January-June in 2007. Total sample of 41,355 cases was analyzed using the statistical program SPSS(Version 12.0). For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F-test, Scheffe test, t-test, logit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employed. People in the age range of 30-40s, males, high-school graduates, married couples, part-time employees, costfree residents and residents in other regions were relatively high users of the debt management program. Reasons of credit delinquency were diverse and was combined to credit default. However, increases in expenses and income reductions were found to be the most frequent reasons. Financial conditions of delinquents were worse than those of average persons shown on the national statistics. It was also found that age, sex, educational level, occupation, region of residence, home-ownership, reason of delinquency, income and total outstandings of debt were significant determinants of short-term debt burden which was measured by the ratio of monthly payment to income and long-term debt burden which was measured by repayment period.

▲주요어(Key Words) : 신용회복지원제도(credit counseling and recovery service), 금융채무불이행자(debt delinquents), 재무상태 (financial status)

Ⅰ. 연구목적 및 필요성

개인 및 가계부채의 증가로 인한 신용불량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최근 가계부채문제는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개인이나 가계가 채무불이행을 경험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6년말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는 280만 명이다. 2004년도에 재경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자력으로 상환이 가능한 자는 약 19%에 불과하다. 63%의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채무조정을 통하여 상환이 가능하고, 약 12%는 채무조정을 받더라도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제도의 도움을 받아 채무조정을 받을

* 이 논문은 인천대학교 2007년도 자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주 저 자 : 성영애 (E-mail : sungya@incheon.ac.kr)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통하여서도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는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또는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으며,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변제기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통하여 이들이 과중채무로부터 벗어나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줄 목적으로 2002년 10월 출범한 신용회복지원제도이다(www.ccrs.or.kr). 2002년 10월 출범한 이후 2007년 2월 까지 총 610,459명의 채무조정실적을 보여주고 있다(신용회복위원회, 2007). 최근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건수는 크게 줄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있어 신용회복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불이행자의 경제적 재기를 도와줌과 동시에 가계파산을 예방할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만큼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불이행자의 특성과 경제적 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유경원(2006)에 따르면 개인파산의 결정과정은 채무불이행, 잠재파산, 파산신청의 세단계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신청자에 대한 이해는 채무불이행자의 재기가능성이나 파산 가능성 등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 채무불이행자의 경제적 상황은 채무가 없거나 채무상환을 잘 이행하는 자보다는 열악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으나, 이들이 어느 정도로 열악한지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채무불이행자간에도 커다란 차이가 존재할 것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 이들이 분류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채무특성를 파악하여 이들의 재기가능성이나 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살펴봄으로써 금융채무불이행자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신용회복지원제도로의 발전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관련연구의 고찰

금융채무불이행은 그 정도에 따라 단기연체로부터 파산에 이르기까지 그 심각도가 다르다. 금융채무불이행에 대한 분석방법도 단순 현황분석에서 미시적 분석과 거시적 분석 등 다양하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직접 그들의 특성과 재무상태를 파악한 연구는 드물다. 다음에서는 국내연구를 중심으로 채무문제 심각성의 단계에 따라 연체자, 금융채무불이행자, 파산자를 대상을 이루어진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1. 연체에 관한 연구

연체는 금융채무불이행단계로 가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일반적인 신용이용자를 대상으로 연체여부를 분석한 대표적 연구에는 이기춘과 박근주(1997)가 있다. 이들은 연체경험자와 비연체경험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신용 연체행동에 대한 관련요인을 살펴보았다. 소비자신용을 서비스신용, 신용카드, 할부구매의 세 요소로 나누고 각각 연체에 대하여 영향을 주는 요소도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심리적 특성, 신용이용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로짓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보면, 서비스신용에는 전문・관리직(+), 주부(+), 가계 소득(-), 자동이체 정도(-)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신용카드 상환 연체 여부에는 부채억제신조 준수정도(-), 신용 카드 남용(+)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고, 할부구매신용 상환 연체에는 남성(-), 교육정도(+), 배우자 있음(+), 주부(-), 가계소득(-), 가계부채(+), 신용 카드 남용(+)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최근에 이은영과 허은정(2005)은 삼성금융연구소에서 조사한 2003년 가계금융행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부채보유 가계의 연체여부 및 연체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Logit분석 및 Tobit 분석을 실시한 결과 맞벌이 가계와 자영업 가계의 경우, 가구의 크기가 클수록, 총자산대비 부채부담이 클수록, 주관적 부채부담이 높을수록, 연체불가 태도가 낮을수록 연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가계 중에서 한번이라도 연체한 경험이 있는 가계들을 대상으로 연체빈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의 크기가 클수록, 자영업자 가계일 경우, 맞벌이 가계일 경우, 월소득 대비 부채상환액이 높을수록, 신용카드를 과다 사용할수록 연체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미와 김영신(2005)은 대학생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체경험여부와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았다. 연체경험여부에는 재무관리습관(-), 신용카드 지식(+), 가계소득(+)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연체경험정도에는 신용카드 지식과 재무관리습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들과는 달리 조혜진과 최현자(2004)는 일반 신용이용자 450명과 신용불량자 127명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신용과다사용 심각도를 주관적 측정문항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일반인의 경우도 신용과다사용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고위험, 위험, 잠재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고위험집단의 경우 돈에 대한 강박적 태도, 재정상태 인지부족, 탐색적 지출습관, 투기성향 및 총부채액,

월평균상환액, 직업이 신용과다사용 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냈다.

2. 금융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직접 조사한 연구는 많지 않다. 있다하더라도 신용불량자의 현황에 관해 추이분석이나 거시적으로 접근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임대봉과 이병완(2005)은 신용불량자 중에서 특히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 발생 요인을 거시적 지표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신용카드 발행수, 현금서비스, 신용카드 이용금액, 가계신용잔액, 경제성장률(GDP) 등이 신용불량자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신용불량 증가율은 경제성장률보다 현금서비스와 신용카드발행수의 증가율에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에서 2004년 신용불량자 3,9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용불량자 현황과 대응방향에 관한 보고서에서는 신용불량자의 증가추이와 더불어 신용불량자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신용불량자의 부채, 소득, 직업, 연체대출금사용처, 신용불량자가 된 원인, 연체금상환을 위해 타 금융기관을 이용한 경험,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의 선결과제, 상환능력유무에 대한 주관적 판단, 예상상환완료시점에 대한 주관적 판단, 객관적 상환기간 등을 조사하였지만 단순 수치제시에 그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신용불량자문제는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임을 기본방향으로 하되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최공필 등(2004)도 개인신용불량자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사유별, 연령별, 성별에 따른 신용불량자의 추이를 살펴보고, 개인신용불량자가 급증한 원인은 채무상환을 무시한 카드관련 신용의 부담임을 강조하면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상의 연구가 통계적 검증을 거쳤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추이를 제시하는 자료라고 한다면, 최근에 최현자와 조혜진(2008)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대상자이지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는 다중연체자문제를 통계적 모형을 이용하여 다루고 있다. 채무재조정신청자의 경제적, 사회인구학적, 부채관련 특성을 일반 신용회복지원자와 재조정신청자를 비교하였고, 이러한 특성이 채무재조정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결혼상태, 부양가족수, 직업, 월소득액, 조정 후 채무액, 월채부상환액, 소득대비 월소득상환액비율, 소득대비 기타채무상환액, 기타채무상환여부에 따라 재조정신청가능성이 달라짐을 밝혀내었다. 이 연구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채무조정과정에서 실패하여 다시 조정절차를 밟고 있는 문제가 매우 심각한 금융채무불이행자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전체 채무조정대상자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는데,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매월 신용회복위원회 활동실적을 보도하면서 전반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신용회복신청자의 연령분포, 소득분포, 부채규모별 분포 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다 자세히 또한 다른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한편 신용불량에 이르게 되는 다양한 원인을 분석하거나 원인에 따라 신용불량자를 분류한 문헌이 있다. Mohon(1999)은 신용불량이 생기게 된 원인을 채무자, 채권자, 경제 환경, 예기치 못한 개인 사정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신용을 공여하는 기업의 무분별한 판촉행위, 높은 이자율의 책정, 불충분한 신용평가, 이자율의 상승이나 신용카드사용을 유인하는 정책, 경제 위기,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이나 실직, 이혼 등과 같은 이유 때문에 신용불량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Waddell(1999)은 신용불량자들이 신용불량을 경험하는 중요한 이유를 지출 통제능력의 상실과 재무관리능력의 부족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지출통제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경우 욕구와 욕망을 구분하지 못하여 자존심 혹은 스트레스나 감정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소비하게 되면서 신용불량을 겪게 된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신용불량을 야기한 원인에 따라 분류를 한 문헌이 일부 존재한다. 김덕한(2003)은 신용불량자를 크게 생계형, 낭비형, 방탕형, 사업형, 한건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신용회복위원회(2003)에서는 생계유지형(실업 또는 부분실업 등으로 인한 생계비 부족 때문에 빚을 지게 되는 유형), 사업투자형(빚을 내어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사업에 실패하여 빚을 갚지 못하고 신용불량자가 된 유형), 위기대처형(거액의 치료비 또는 교통사고나 기타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빚을 지고 갚지 못한 경우), 투기도박형(주식투자나 도박에 빠져 빚을 지게 되는 경우), 사치낭비형(자신의 수입이나 재정상태에 비하여 과도한 소비를 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유형), 유흥방탕형(과도한 음주나 방만한 사생활로 인해 빚을 지게 되는 경우)로 구분한 바 있다. 앞의 세 유형은 현실적 필요에 의하여 빚을 지게 된 경우인 반면, 뒤의 세 유형은 자신의 욕망을 조절하지 못하거나 강한 충동적인 성향으로 인해 빚을 지게 된 경우이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신용불량자를 유형화하여 유형에 따른 상담을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주로 이들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활용되고 있을 뿐, 신용불량의 원인에 따라 재무상태를 파악한 연구는 전무하다.

3. 개인파산에 관한 연구

연체, 금융채무불이행의 단계를 지나게 되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이르게 된다. 개인파산에 관한 그동안의 국내연구는 주로 파산의 제도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왔다(김난

도, 1998, 허경옥, 1999, 박종현, 2003 등). 서병호(2007)는 가장 최근의 개인파산의 현황과 시사점을 제시하여 주었다. 개인파산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기보다는 동향과 의견을 제시하는 보고이다. 개인파산의 증가는 통합도산법의 시행, 파산절차의 간소화, 면책허가율의 상승 등과 관련 있고,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에 비해 채권회수율이 낮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개인파산은 소비자신용증가에 따른 과다소비형 파산의 비중도 상당하며 이것이 생활고형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신용교육 등 예방과 과다소비형 파산자의 건전한 회생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외국의 경우는 개인파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Fay et al., 2002; Gross & Soules, 2002 등) 우리나라의 경우는 최근 개인파산이 증가하면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유경원(2006)은 2004년도 파산자 자료와 한국노동연구원의 가계패널자료를 결합하여 개인파산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파산 시 주는 금전적 편익, 개인의 선호를 반영하는 인구학적 요소(연령, 성별, 결혼여부, 자녀수)와 교육수준, 주택소유여부, 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소득수준,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질병, 실직, 이혼 등)가 개인파산의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프로빗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는데, 금전적 편익(+, 비선형), 교육수준(-), 연령(+ 비선형), 자가소유여부(-), 이혼여부(+), 가구크기(-), 질병(+)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내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신청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신청자의 연체발생사유는 무엇인가?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연체발생사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신청자의 소득 및 생계비수준 및 채무상태는 어떠한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연체발생사유는 소득, 생계비 및 채무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자료에 포함된 변인을 고려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수로서 연령, 성별, 교육수준, 혼인상태, 직업, 주거지 및 주거상황를 포함하였다. 채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총채무액, 월상환가능액, 월평균부채부담, 추정상환개월수, 가족공동신청여부를 살펴보았다. 총채무액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금융기관채무뿐만 아니라 별도로 상환해야 하는 담보채무액도 포함된 액수이다.[1] 월상환가능액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말한다. 월평균부채부담은 소득에서 월상환가능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매달 느끼게 되는 단기부채부담을 보여준다. 추정상환개월수란 총채무액을 월상환가능액으로 나눈 값으로 모든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개월수를 말하고, 얼마나 장기간 채무상환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장기부채부담을 보여준다.[2] 가족공동신청여부는 분석대상 외에 그가 속한 가족 내에서 신용회복을 신청한 가족원이 있는지의 여부로서 가족 내 채무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변수이다.

2.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2007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로서 본인 소득이 있는 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모두 41,355명인데 이 기간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신청 후 확정을 받은 모든 대상을 포함하는 표본이다.[3] 채무조정시기별 사례수는 <표 1>과 같다.

이들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되었거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자로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으며,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해당 금융기관의 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이다.[4]

분석방법은 백분율, 평균, 중앙값, 분포도, t-test, 분산분석 및 쉐페테스트, 로짓분석 및 회귀분석 등이며 SPSS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

1) 본 연구의 원자료에 있어 총채무액을 신용회복지원의 대상이 되는 채무와 신용회복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채무를 구분할 수 없었다. 또한 총채무액에는 원금과 더불어 그동안의 이자와 연체이자가 모두 포함된 금액이며, 상각채권도 포함된 금액이다. 따라서 실제로 최종적으로 갚아야 할 채무액은 총채무액과는 다르며, 그 금액은 줄어들게 되지만 채무상태에 따라 감면률이 서로 다르게 적용된다.

2) 위와 같은 이유로 추정상환개월수는 실제로 상환해야하는 개월수와는 다른 개념이다. 추정상환개월수는 감면이 되지 않고 신용회복지원 대상이 되는 채무뿐만 아니라 다른 채무를 모두 갚는다면 걸리게 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즉 신용회복지원이 없는 경우 채무상환에 소요되는 개월수를 의미한다.

3) 신용회복위원회의 이용자에는 본인소득이 없거나 생계비가 소득을 초과하여 제3자의 소득지원을 받아 채무조정을 받는 자도 있으나 이들의 경우 소득자료와 생계비 등의 자료가 부족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생계를 지원받는 경우는 분석에 포함하였다.

4)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조정대상이 되지 않는 담보채무나 비협약기관의 채무는 따로 상환을 하므로 실제 채무규모는 매우 커질 수 있다.

<표 1> 본 연구 분석대상의 채무조정시기별 사례 수

변 인	구 분	N	%
채무조정 신청일	2007년 1월	7897	19.1
	2007년 2월	7183	17.4
	2007년 3월	7526	18.2
	2007년 4월	7003	16.9
	2007년 5월	6489	15.7
	2007년 6월	5257	12.7

<표 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신청자의 일반적 특성 (N=41,355)*

변 인	구 분	N	%
연 령	20대	4374	10.6
	30대	16092	38.9
	40대	14007	33.9
	50대	5533	13.4
	60대	1349	3.3
	평 균	40.59세	
성 별	남	20108	51.4
	여	21244	48.6
교육수준	초등학교	2749	6.6
	중학교	5764	13.9
	고등학교	24861	60.1
	대학교 이상	7981	19.3
혼인상태	기 혼	24427	59.1
	미 혼	10000	24.2
	기타(이혼, 사별 등)	6927	16.8
직 업	급여소득자	15208	36.8
	자영업자	5739	13.9
	이전소득자	571	1.4
	비정기직종사자	19803	47.9
주거지	서울시	7611	18.4
	광역시	13078	31.6
	기타도시	20666	50.0
주거상황	자 가	1358	3.3
	임차주택	14515	35.1
	사 택	563	1.4
	무상(배우자)	8588	20.8
	무상(기타)	16274	39.4

*사례수의 합이 다소 다른 것은 결측치 때문임.

Ⅳ. 연구결과

1.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평균 연령은 40.59세이고, 30대가 38.9%, 40대가 33.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50대, 20대도 각각 10%를 넘는다. 남녀비율은 거의 반반이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비중이 60.1%로 가장 높았으며, 대졸자가 19.3%로 그 뒤를 이었다. 기혼자가 59.1%로 가장 많았으며 미혼자가 24.2%를 차지하였다. 이혼이나 사별한 자도 16.8%를 차지하였다. 이는 혼인횟수 대비 이혼횟수로 계산한 우리나라 평균 이혼률 보다 높은 수치이다.[5)]

직업은 비정기직종사자의 비중이 47.9%로 가장 높게 나타나 소득의 불안정성이 높은 경우가 거의 과반수에 이르렀다. 급여소득자가 36.8%, 자영업자가 13.9%로 나타났다. 주거지는 기타 지역이 50.0%, 광역시 31.6%, 서울이 18.4%이다. 주거상황을

5) 우리나라의 이혼율을 산정해보면, 2004년 1월말 현재 혼인경력자의 총 혼인횟수가 28,156,405이고, 총 이혼횟수는 2,623,659이므로 이를 백분율로 계산하면 9.3%가 된다(부동호, 2004).

살펴보면 지인의 거주지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39.4%로 가장 많아 주거상황도 매우 열악한 사례가 많았다. 그 다음으로 본인 명의의 전월세를 포함하는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35.1%로 많았다. 배우자명의의 주택(자가 및 임차주택포함: 본 연구자료에서는 구분할 수 없었음)에 거주하는 비율이 20.8%였다. 본인명의의 자가 거주자는 3.3%에 불과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여 보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는 대상은 30~40대, 남성, 고등학교 졸업자, 기혼, 비정기직 종사자, 무상거주자, 기타지역거주자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2. 연체발생사유와 영향요인

1) 연체발생사유와 사유개수

<표 3>과 <표 4>에서와 같이 신용회복지원자의 연체발생사유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수의 사유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먼저 지출증가로 인하여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59.7%로 가장 빈번하였다. 특히 기본생계비의 증가로 인해 연체에 이르게 된 경우가 52.9%에 이르렀다. 의료비나 교육비의 증가로 인하여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도 각각 12.3%, 11.9%를 차지하였다.

소득감소가 연체사유가 되는 경우도 53.7%로 과반수이상의 연체사유로 나타났다. 소득감소 중 가장 큰 사유는 사업소득의 감소로 나타나 자영업을 하다가 사업소득의 감소로 인하여 연체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주었다. 실직으로 인하여 연체에 이르는 경우가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관리능력의 부족은 23%가 연체사유로 응답하였다. 특히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하여 연체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혼이나 재해, 사고 및 기타사유도 15.3%로 나타났다.

단독사유로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는 39.2%였고, 나머지는 복합사유로 인하여 연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가지 사유가 동시에 작용한 경우가 가장 많아 49.4%가 이에 해당되었다. 3개의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도 10%에 달했다.

<표 3> 연체발생사유 (복수응답가능)

연체사유	빈 도	사례%	응답%	세부연체사유	빈 도	사례%	응답%
소득감소	22165	53.7	35.4	실 직	5805	14.1	8.1
				근로소득감소	1737	4.2	2.4
				사업소득감소	15298	37.1	21.3
지출증가	24607	59.7	39.3	생계비증가	21827	52.9	30.4
				교육비증가	4904	11.9	6.8
				의료비증가	5055	12.3	7.0
관리능력부족	9498	23.0	15.2	금융비용증가	231	.6	.3
				개인간금전거래	6214	15.1	8.7
				보증채무상환	1374	3.3	1.9
				투자실패	439	1.1	.6
				사기피해	1935	4.7	2.7
				소득초과지출	500	1.2	.7
기타사유	6302	15.3	10.1	이 혼	678	1.6	.9
				재해/사고	415	1.0	.6
				기 타	5297	12.8	7.4
	62572	151.7	100.0		71707	173.9	100.0

<표 4> 연체발생사유 개수

사유개수	빈 도	%
1	16166	39.2
2	20364	49.4
3	4125	10.0
4	510	1.2
5	64	.2
6	13	.0
합 계	41242*	100.0
평 균	1.74	

* 결측 113사례

<표 5>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연체발생사유에 미치는 영향

변 인	변인 값	소득감소	지출증가	관리능력부족	기타사유	연체사유개수
		로짓계수	로짓계수	로짓계수	로짓계수	회귀계수(베타)
연령 (기준:60대)	20대	-.311***	.416***	-.400***	.106	-.031(-.014)
	30대	.117	.140*	-.176*	.162	.033(.032)
	40대	.226***	.164**	-.345***	-.057	.061(.041)**
	50대	.128*	.128*	-.218**	-.041	.075(.037)***
성별 (기준:여)	남	.384***	-.084***	-.113***	-.041	.023(.016)**
교육수준 (기준:대학교이상)	초등학교	-.265***	.059	-.141*	.033	-.091(-.032)***
	중학교	-.087*	.011	-.101*	.018	-.055(-.027)***
	고등학교	.068*	-.067*	-.014	-.006	-.038(-.027)***
혼인상태 (기준:기혼)	미 혼	-.227***	-.107**	.376***	-.086*	-.059(-.036)***
	기타(이혼, 사별 등)	-.201***	-.180***	.062	.583***	-.045(-.024)***
직업 (기준:급여소득자)	자영업자	.703***	-.090**	-.204***	-.044	.065(.032)***
	이전소득자	-.582***	.297**	.123	.156	.032(.005)
	비정기직종사자	.108***	.188***	-.194***	.076*	.051(.037)***
주거지 (기준:서울)	광역시	.014	-.006	.112**	.053	.031(.020)**
	기타도시	.083**	.029	.103**	.153***	.080(.057)***
주거상황 (기준:자가)	임차주택	.168**	.115*	-.193**	-.077	-.004(-.003)
	사 택	-.146	-.069	.323**	-.032	-.048(-.008)
	무상(배우자)	.098	-.006	-.030	-.048	-.020(-.012)
	무상(기타)	.230***	-.068	-.107	-.095	-.036(-.025)
가족공동신청여부 (기준:아니오)	예	.071	.224***	-.080	.312***	.176(.061)***
상 수		-.435***	.230	-.831***	-1.917***	1.670***
모델 카이제곱/F값		1551.99***	351.01***	418.29***	387.37***	31.54**
Nagelkerke R^2		.049	.011	.015	.016	.015

2)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연체발생사유와 사유개수에 미치는 영향

<표 5>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연체발생사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로짓분석과 연체발생사유 개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로짓분석은 각각의 사유로 인하여 연체가 발생했다고 응답한 경우를 1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를 0으로 분석하였다.

(1) 소득감소

먼저 소득감소를 이유를 든 경우를 살펴보면, 60대보다는 40대, 50대의 경우 소득감소로 인해 연체를 경험하는 경향이 더 높았고 20대의 경우는 소득감소를 이유를 드는 경향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40~50대의 경우 소득감소가 연체사유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았고 20대가 그 가능성이 가장 낮았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학력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경우, 미혼이나 기타의 경우보다는 기혼자가, 이전소득자보다는 급여소득자가, 급여소득자보다는 자영업자나 비정기직 종사자의 경우, 서울보다는 기타도시 거주자의 경우, 자가 거주자보다는 임차주택이나 지인에 무상으로 의탁하여 거주하는 경우 소득감소를 연체사유로 언급하는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지출증가

연령이 낮은 경우, 특히 60대보다는 20대의 경우, 남성보다는 여성이, 고등학교졸업자보다는 대학교 졸업자인 경우, 미혼이나 기타보다는 기혼인 경우, 자영업자보다는 급여소득자가, 급여소득자보다는 이전소득자나 비정기직 종사자의 경우, 자가 거주자보다는 임차주택 거주자의 경우, 가족이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지출증가가 연체사유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관리능력부족

관리능력의 부족은 60대의 경우,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 학력이 대졸이상인 경우, 미혼인 경우, 자영소득자나 비정기직 종사자보다는 급여소득자의 경우, 서울보다는 광역시나 기타도시 거주가가, 임차주택 거주자보다는 자가 거주자가, 자가 거주자보다는 사택거주자의 경우 연체사유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기타사유

기타사유로 인해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은 혼인상태, 직업, 주거지 및 가족공동신청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

<표 6>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신청자의 소득과 생계비 수준 (N=41,355)

소 득	평균(천원)	1020.1	소득원수	평 균	1.0
	중앙값	1000.0		중앙값	1.0
	-50만원 이하	6.3		1개	97.8
	-100만원 이하	53.3		2개	2.2
	-150만원 이하	31.9		3개	0
	-200만원 이하	7.1			
	-300만원 이하	1.3			
	300만원 초과	.1			
생계비	평균(천원)	823.7	월임차료	평균(천원)	65.8
	중앙값	780.0		중앙값	0
	-10만원 이하	.4		0원	67.5
	-20만원 이하	.5		-10만원 이하	5.2
	-30만원 이하	.6		-20만원 이하	15.8
	-50만원 이하	18.5		-30만원 이하	9.5
	-80만원 이하	33.4		-50만원 이하	1.9
	-100만원 이하	18.2		50만원 초과	.1
	-150만원 이하	25.4			
	-200만원 이하	2.9			
	-250만원 이하	.3			
	250만원 초과	.0			

다. 미혼보다는 기혼이, 기혼자보다는 이혼이나 사별자의 경우가 기타사유를 언급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자가 기혼자보다 그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기타사유에 이혼이 포함되어 나타난 당연한 결과이다. 급여소득자보다는 비정기직 종사자의 경우, 가족공동신청자의 경우 기타사유로 연체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5) 연체발생사유 개수

60대보다는 40~50대의 경우 더 많은 이유로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보다는 남성의 경우, 대학졸업자의 경우, 기혼자의 경우, 자영업자나 비정기직 종사자의 경우, 광역시 및 기타도시거주자의 경우, 가족공동신청을 한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연체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소득, 생계비 및 채무상태와 영향요인

1) 소득수준, 생계비 및 채무상태

(1) 소득수준

<표 6>은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의 소득과 생계비수준과 분포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자의 월평균 소득은 102만원이며 중앙값은 100만원이다. 통계청(2007)에서 조사한 2007년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인 이상 전국가구의 월평균소득이 100만원 이하 가구는 10.9%이다. 우리나라 전국 가계 하위 20%의 월평균소득은 132만 9천 300원임을 보아도 채무조정신청자는 소득수준이 매우 낮은 저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2007년도 고졸 근로자 평균임금인 178만원에 비하여도 매우 낮은 것이다.

월평균 소득의 분포를 보아도 51만원~100만원 사이가 5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신용회복위원회 조정신청자의 59.9%가 전국가구로 본 소득 하위 10%에 속하는 것이다. 소득이 101만원~150만원 이하가 31.9%로 그 다음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채무조정신청자의 91.5%가 150만원 이하의 소득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소득원수를 보면 한 개의 소득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생계비수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신청자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채무를 8년 이내에 나누어 갚을 수 있는 소득수준에 있어야 한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가족수를 고려한 생계비를 최저생계비의 90~150%까지 인정해주고 있다. 본 연구대상인 채무조정신청자의 생계비는 평균 82.4만원이고 중앙값은 78만원으로 계산되었다. 이는 2007년도 2인 가족 최저생계비인 73.4만원 보다는 높으나 3인 가족 생계비인 97.3만원보다는 낮은 수치이다. 이는 채무조정신청자의 부양가족이 본인 포함하여 2~3인 정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생계비의 분포를 보면 51만원~80만원 사이가 33.4%로 가장 많았으며[6], 100만원 초과~150만원 이하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6) 생계비규모로 1인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 나온 것은 일부 생계비를 보조받는 경우이다.

채무조정자의 96.1%가 31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를 생계비로 지출하겠다고 응답한 것이다. 이 중 월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대상은 32.5%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임차료의 지출이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3) 총채무

<표 7>을 보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신청자의 총채무액은 평균 3,482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총채무액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대상이 되는 신용채무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이 되지 않아 별도로 갚아나가야 하는 담보채무 및 기타채무가 포함된다. 또한 원금과 이자, 연체이자 및 수수료를 모두 합한 값이다. 총채무액의 중앙값은 2,838만원으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채무액의 분포를 살펴보면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가 26.5%로 가장 많았으나,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와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도 18~22% 사이에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한국은행(2007)이 발표한 '2007년 가계신용동향'에 따르면 2007년도 가계신용잔액은 630조 6786억원으로 집계되는데, 이를 2007년 통계청 추계 가구수(1,641만 7,423가구)로 나누어 보면 가구당 3,842만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신용회복지원다의 총채무액은 오히려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으나 배우자나 기타가족원의 채무를 합한다면 더욱 커질 수 있다. 한국은행(2008)에 따르면 2007년도 1인당 채무액 1,527만원이다. 1인당 채무액을 기준으로 보면 신용회복조정신청자의 총채무액은 매우 높은 편이다.

(4) 월상환가능액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 월상환가능액인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신청자의 평균 월상환가능액은 19.6만원, 중앙값은 15.0만원에 불과하다. 즉 매달 갚을 여력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월상환가능액의 분포를 보면 10만원 이하가 35.9%로 가장 많고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가 29.7%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5) 월부채부담 : 단기부채부담

월상환가능액이 월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즉 월부채부담을 살펴보면 평균 19%로 나타나서 평균적으로 보면 부채비율이 심각하게 나쁜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부채비율은 20~25% 이하가 적절하다고 보고 있지만 이러한 부채비율의 기준은 금융채무불이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듯하다. 월상환가능액의 분포나 월부채부담의 분포를 보아서도 절대적인 수치상 매월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소득이 절대적으로 낮은데도 불구하고 월부채부담이 적게 나타난 것은 생계비를 빼고 남은 소득인 월상환가능액이 지나치게 작기 때문이다. 최저생계비를 빼면 소득의 겨우 20% 이하만 부채상환에 쓸 수밖에 없는 가계의 비율이 63.2%에 이른다. 이는 월부채부담이 작다고 좋은 것은 아니며, 역으로 경제상황이 매우 열악함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으며 부채문제의 장기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을 보여주는 것이다. 과중채무문제를 경험하는 경우 과중한 부채가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것은 미래설계를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장단기 재무전략의 차원에서 보면 단기부채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장기부채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채무조정신청자의 경우는 단기부채부담은 매우 완화된데 비하여 채무부담의 지나친 장기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다음에서 살펴볼 추정상환개월수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입증된다.

(6) 추정상환개월수 : 장기부채부담

월상환가능액으로 총채무액을 모두 변제하려면 평균 276개월(23년), 중앙값 166개월(13.8년)이 걸린다. 신용회복지원 신청자의 86.1%가 빚을 모두 갚으려면 96개월이 넘게 걸린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최대기간은 96개월(8년)인데, 이렇게 긴 기간이 나온 것은 신용회복대상이 되지 않는 채무와 채무감면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용회복지원을 받게 되면 이자나 연체이자, 상각채권 등의 채무감면으로 인하여 예상 상환개월수는 매우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신용회복지원대상이 아닌 채무에 대해서는 이러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경우 추정상환개월수가 매우 길게 나타난 것은 또다시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채무조정대상자중 일부는 소득부족으로 인하여 상환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월상환액은 2% 정도의 이자만이 계상되기 때문에 유예대상의 경우는 추정상환개월수보다 훨씬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는 채무상환유예자의 경우 인해 앞으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7) 가족공동신청여부

가족이 함께 금융채무불이행문제를 경험하는 경우 가족이 공동으로 신용회복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동신청자는 소득과 생계비가 함께 고려되어 채무조정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공동신청자는 복수의 가족원이 신용불량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점에서 가계재무상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집단이다. 가족원이 개인회생제도나 파산과 같은 다른 회복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파악할 수 없었지만 본 연구 분석대상자 중 6.4%가 신용회복위원회 공동신청자로 집계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신청자의 소득수준과 생계비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어서 월상환가능액 규모도 매우 작다. 이로 인해 지나치게 오랜 기간 갚아야 하며,

<표 7>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신청자의 채무상태 (N=41,355)

총채무액 (신용+담보)	평균(천원)	34819.6	추정상환개월수 (총채무액/월상환가능액)	평균(개월)	274.6
	중앙값	28380.0		중앙값	166.6
	-500만원 이하	2.2		-12개월 이하	.1
	-1000만원 이하	8.1		-24개월 이하	.5
	-2000만원 이하	22.1		-36개월 이하	1.1
	-3000만원 이하	20.4		-48개월 이하	1.5
	-5000만원 이하	26.5		-60개월 이하	2.1
	-1억원 이하	17.9		-72개월 이하	2.5
	1억원 초과	2.7		-84개월 이하	2.7
				-96개월 이하	3.5
				96개월 초과	86.1
월상환가능액	평균(천원)	196.4	월부채부담 (월상환가능액/소득)	평 균	.19
	중앙값	150.0		중앙값	.17
	-10만원 이하	35.9		-.1 이하	29.0
	-20만원 이하	29.7		-.2 이하	34.2
	-30만원 이하	17.0		-.3 이하	19.5
	-50만원 이하	12.7		-.4 이하	10.4
	-80만원 이하	3.6		-.5 이하	4.5
	-100만원 이하	.6		-.6 이하	1.4
	-150만원 이하	.3		-.7 이하	.5
	150만원 초과	.1		-.8 이하	.1
				.8 초과	.3
가족공동신청여부	예	6.4			
	아니오	93.6			

신용회복지원 대상 채무가 아니 다른 채무로 인해 문제가 장기화되고 파산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소득, 생계비 및 채무상태

<표 8>에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소득, 생계비, 총채무액, 월상환가능액, 월부채부담 및 추정상환개월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령, 성별, 교육수준, 혼인상태, 직업, 주거지, 주거상황, 가족공동신청여부 및 소득수준(종속변인이 소득인 경우는 제외)에 따라 살펴보았는데 모든 변인에 따라 소득, 생계비, 총채무액, 월상환가능액, 월부채부담 및 추정상환개월수가 달라졌다.

먼저 연령에 따른 소득, 생계비, 월상환가능액, 월부채부담, 총채무액 및 추정상환개월수를 살펴보면, 소득과 생계비의 패턴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즉 40대가 가장 높았고 60대가 가장 낮은 역U자형 곡선모양을 보여주었다. 월상환가능액은 30대, 40대, 50대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20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월부채부담은 소득이 적은 60대의 월부채부담이 가장 높았다. 총채무액규모는 50대가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40대, 30대, 60대 순으로 작았으며, 20대가 가장 작았다. 총채무액을 월상환가능액으로 갚는데 거리는 기간인 추정상환개월수는 40대, 50대, 60대가 비슷한 수준으로 긴 편이었고 20대가 가장 짧은 편이었다. 즉 연령별로 볼 때 60대가 소득도 낮고 월부채부담도 가장 크며, 총채무를 갚는데 걸리는 기간도 가장 길게 추정되는 집단이다.

성별에 따른 경향을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소득과 생계비 수준이 더 낮고 월상환가능금액도 더 적은편이다. 총채무액의 규모는 여성이 더 작은 편이기는 하지만 소득대비 월상환가능액으로 계산한 월부채부담은 여성이 더 크며, 추정상환개월수도 여성이 유의미하게 더 길다. 즉 남성 채무불이행자보다는 여성 채무불이행자의 경제여건이 더 열악하고 채무상태도 더 나쁘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소득, 생계비, 총채무액, 월상환가능액이 유의미하게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총채무액도 많지만 월상환가능액도 더 크다. 월부채부담은 고졸이하와 대학교 졸업자 간에 차이가 나타나서 대졸자의 부채부담이 더 큰 편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른 추정상환개월수는 분산분석의 결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나 쉐페테스트의 결과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은 채무의 이용의 적극성이나 용이성을 높여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금융채무불이행이라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으로 보여준다.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신용관리에 대한 지식과 능력도 높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부채이용에 더 많이 노출됨으로써 더 열악한 채무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혼인상태를 기혼, 미혼 및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기혼의 경우 소득수준이 가장 높고 생계비도 가장 많이 든다. 월상환가능금액은 큰 편이었지만 총채무액도 커서 월상환가능금액으로 총채무를 모두 갚는데 걸리는 시간도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의 경우 소득수준과 생계비수준이 가장 작은 집단이다. 총채무액과 월상환가능액도 작았지만 소득수준이 낮아 월부채부담은 미혼이 가장 큰 편이었다. 이혼이나 사별의

<표 8>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소득, 생계비 및 채무상태

변 인		소 득	생계비	총채무액	월상환가능액	월부채부담	추정상환개월수
	평 균	1020.1	823.7	34819.6	196.4	.19	274.6
연 령	20대	881.6b	715.6b	24239.4a	161.0a	.19ab	193.4a
	30대	1039.7d	837.8d	35558.2c	201.9c	.19bc	269.9b
	40대	1081.7e	881.7e	36667.0c	199.9c	.18a	292.1bc
	50대	967.9c	768.0c	36633.1c	199.9c	.20c	297.2cd
	60대	809.9a	631.8a	33335.7b	178.1b	.21d	319.1d
	F값	354.8***	377.2***	207.9***	45.5***	27.8***	95.3***
성 별	남	1196.0	980.3	36845.0	215.8	.18	271.5
	여	834.2	658.3	32680.5	175.9	.21	277.9
	t값	104.6***	110.2***	16.2***	24.2***	-26.1***	-2.0*
교육수준	초등학교	868.9a	703.6a	31093.0a	165.3a	.19a	285.9
	중학교	958.9b	780.1b	33256.5b	178.9b	.19a	280.5
	고등학교	1023.7c	830.2c	34555.4b	193.5c	.19a	272.7
	대학교 이상	1105.1d	876.2d	38054.8c	228.9d	.20b	272.5
	F값	305.4***	215.6***	66.1***	152.8***	19.2***	2.2
혼인상태	기 혼	1061.9c	861.6c	36017.9c	200.3b	.19b	290.2b
	미 혼	941.9a	745.5a	31709.6a	196.5b	.20c	231.5a
	기타(이혼, 사별 등)	985.5b	802.8b	35082.4b	182.7a	.18a	281.6b
	F값	358.9***	438.9***	95.3***	28.8***	58.5***	121.4***
직 업	급여소득자	1183.0c	950.6c	36406.9b	232.3c	.20ab	216.0a
	자영업자	1178.3c	935.9c	41556.2c	242.4c	.20b	285.9b
	이전소득자	775.3a	643.0a	29842.1a	122.3a	.19a	483.6c
	비정기직종사자	856.6b	698.9b	31804.4a	157.7b	.19a	310.2b
	F값	281.48***	2145.8***	239.8***	788.8***	24.8***	340.7***
주거지	서울시	1045.9c	838.8b	34737.4b	207.1c	.19b	281.6b
	광역시	993.4a	806.4a	33491.7a	187.0a	.19a	267.1a
	기타도시	1027.4b	829.0b	35690.2c	198.4b	.19ab	276.8ab
	F값	48.8***	27.0***	27.9***	36.5***	5.1**	5.9**
주거상황	자 가	1234.5d	823.7b	62488.8c	410.8c	.34d	199.6a
	임차주택	1072.2b	882.0c	33371.4a	190.2a	.18a	277.7b
	사 택	1177.2c	912.2c	39158.1b	265.0b	.22c	186.7a
	무상(배우자)	954.2a	768.3a	33632.6a	185.9a	.20b	296.2b
	무상(기타)	985.5a	798.2ab	34275.1a	187.3a	.19b	269.1b
	F값	278.7***	199.9***	409.1***	624.0***	542.0***	40.5***
가족공동 신청여부	예	1060.3	882.2	36002.8	178.1	.18	357.9
	아니오	1017.3	819.7	34739.0	197.7	.19	268.9
	t값	4.7***	7.5***	2.4*	-5.7***	-4.8***	11.6***
소득수준	-100만원 이하		606.9a	30707.6a	152.9a	.20b	304.9c
	-150만원 이하	n.a.	1060.7b	37214.4b	218.4b	.17a	244.7b
	150만원 초과		1457.0c	54755.8c	419.9c	.22c	173.7c
			46205.9***	1446.2***	4885.4***	286.20***	345.0***
총채무액	-1000만원 이하	882.5a	783.3a		99.2a	.12a	99.3a
	-2000만원 이하	934.7b	807.6b		127.1b	.14b	181.8b
	-3000만원 이하	988.2c	824.5b	n.a.	163.8c	.17c	261.5c
	-5000만원 이하	1032.8d	823.9b		208.9d	.21d	338.6d
	5000만원 초과	1195.9e	860.1c		335.8e	.28e	392.6e
	F값	708.4***	44.7***		2891.4***	1972.1***	994.7***

n.a. 해당사항없음

a, b, c, d, e 는 Duncan 의 다중범위검증 결과임.

경우 소득, 생계비, 총채무액, 추정상환개월수 모두 기혼과 미혼의 중간 정도이다. 그렇지만 월상환가능액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소득대비 월상환가능액인 월부채부담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소득이 많다기보다는 월상환가능액이 낮기 때문으로 나타난 결과라 사료된다.

직업에 따른 소득, 생계비 및 채무상태의 차이를 살펴보면, 소득수준과 생계비는 급여소득자와 자영업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전소득자의 소득과 생계비가 가장 낮았다. 총채무액규모는 자영업자가 가장 컸으며 이전소득자와 비정기적 종사자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월상환가능액은 이전소득자가 가장 작았고 월부채부담은 자영업자와 급여소득자가 큰 편이었다. 추정상환개월수는 이전소득자가 가장 길었고 비정기직소득자가 그 다음으로 길었다. 이를 요약하면 이전소득자의 상황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이전소득자의 경우 소득 및 생계비가 가장 적었고 총채무액규모와 월상환가능금액도 가장 작았으나 추정상환개월수는 가장 길었다.

광역시 거주자는 소득수준과 생계비수준이 가장 낮았고 월상환가능액규모도 가장 적었다. 그러나 총채무액이나 월부채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서울시 거주자는 소득수준과 생계비수준이 가장 높고 월상환가능액 규모도 가장 컸다. 이에 따라 부채부담도 높은 편이었다. 기타도시 거주자의 경우는 소득, 생계비수준 및 월상환가능액은 보통 정도이나 총채무액규모는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상환개월수의 경우는 주거지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주택(자가 및 임차주택 모두 포함)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 및 생계비수준이 가장 낮았고 총채무액규모도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상환가능액도 가장 작은 편이었는데 부채부담은 보통 정도였다. 그러나 추정상환개월수는 가장 길게 나타나고 있다. 친지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소득수준은 낮았고 생계비는 보통수준으로 나타나고 월상환가능액은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총채무액도 작은 편이고 부채부담이나 추정상환개월수도 중간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사택거주자의 경우 소득은 중간정도이나 생계비가 가장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월상환가능액은 보통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채부담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총채무액이 보통정도로 추정상환개월수는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 보유자의 경우 소득수준은 가장 높은데 생계비수준은 보통이하로 월상환가능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월부채부담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채무액규모도 매우 크다. 하지만 추정상환개월수는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족공동신청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가족이 공동신청을 한 경우 소득수준과 생계비수준이 더 높고 월상환가능액은 작은 편이며 월부채부담도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부채액은 더 커서 월상환가능액으로 모든 부채를 갚는데 걸리는 시간은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생계비수준도 더 높고 월상환가능액도 더 높았다. 이에 따라 월부채부담도 더 큰 것으로 나나나고 있다. 총채무액이 가장 컸지만 월상환가능액이 크기 때문에 추정상환개월수는 가장 짧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는 생계비수준도 가장 낮고 월상환가능액도 가장 작다. 총부채규모도 가장 적었으나 월상환액이 가장 적어 추정상환개월수는 가장 길다. 월부채부담은 보통정도이다.

총부채액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총부채액이 큰 경우 소득과 생계비수준도 더 높고 월상환가능액도 더 크지만, 월부채부담도 매우 크며, 추정상환개월수도 가장 길다. 반면 총부채액이 작다면 소득과 생계비, 월상환가능액도 작기는 하지만 월부채부담은 매우 낮아지고 추정상환개월수도 급격하게 줄어든다.

3)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연체발생사유가 소득, 생계비 및 채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표 9>는 다른 변인을 통제한 가운데 소득, 생계비 및 채무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1) 소득수준

먼저 연체사유 중 관리능력의 부족을 제외하고는 회귀모형에 포함된 모든 변인은 채무조정신청자의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의 설명력은 43.1%에 이른다. 채무조정신청자의 소득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이며, 직업과 연령의 영향력도 큰 편이었다. 남성의 소득수준이 더 높았으며, 급여소득자의 소득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비정기직 종사자의 소득수준이 가장 낮았다. 60대의 소득수준이 가장 낮고 40대의 소득수준이 가장 높았다. 학력이 높을수록, 기혼인 경우, 서울거주자의 경우, 자가 거주자의 경우, 가족공동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소득수준이 더 높은 경향이었다. 총채무액의 경우 채무액이 많을수록 소득수준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연체사유의 영향을 살펴보면, 모든 연체사유에 있어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현재의 소득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연체사유가 지출증가인 경우 소득수준은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소득감소를 경험한 경우도 소득이 낮아지는 경향이었다. 반면 관리능력이 부족하여 연체를 한 경우 소득이 변화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2) 생계비 수준

직업 및 관리능력부족을 제외하고 회귀모형에 포함된 모든 변인은 생계비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87.6%로 매우 높았다. 영향력이 가장 큰 요인은 소득이다. 소득은 다른 변인에 비해 월등하게 큰 영향을

<표 9>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연체발생사유가 소득, 생계비 및 채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회귀계수(베타))

변 인	변인값	소 득	생계비	총채무액	월상환가능액	월부채부담	추정상환개월수
연령 (기준:60대)	20대	223.355(.172)***	34.946(.032)***	-12275.6(-.143)***	-34.946(-.063)***	-.020(-.048)***	.859(.001)
	30대	235.391(.288)***	36.847(.053)***	-3377.9(-.062)***	-36.847(-.106)***	-.021(-.078)***	27.891(.042)**
	40대	255.838(.304)***	42.798(.060)***	-2279.4(-.041)**	-42.798(-.119)***	-.028(-.101)***	46.099(.068)***
	50대	159.484(.136)***	21.079(.021)***	211.3(.003)	-21.079(-.042)***	-.016(-.043)***	23.528(.025)**
성별 (기준:여)	남	311.220(.390)***	48.700(.072)***	-4476.7(-.085)***	-48.700(-.143)***	-.039(-.149)***	82.876(.129)***
교육수준 (기준:대학교 이상)	초등학교	-83.331(-.052)***	4.372(.003)	-5504.3(-.052)***	-4.372(-.006)	-.001(-.003)**	-38.006(-.029)***
	중학교	-56.452(-.049)***	8.886(.009)***	-4233.8(-.056)***	-8.886(-.018)***	-.005(-.014)***	-26.852(-.029)***
	고등학교	-26.102(-.032)***	10.290(.015)***	-2946.49-.055)***	-10.290(-.030)***	-.006(-.023)	-11.431(-.017)**
혼인상태 (기준 :기혼)	미혼	-182.312(-.196)***	-44.967(-.057)***	2452.4(.040)***	44.967(.113)***	.027(.0890***	-70.974(-.095)***
	기타(이혼, 사별 등)	-59.927(-.056)***	-5.025(-.006)**	1292.7(.018)***	5.025(.011)**	-.005(-.014)**	-23.005(-.027)***
직업 (기준: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11.454(-.010)**	2.322(.002)	2901.4(.038)***	-2.322(-.005)	-.007(-.018)***	37.698(.041)***
	이전소득자	-345.162(-.101)***	9.960(.003)	2005.3(.009)	-9.960(-.007)	-.004(-.003)	178.614(.065)***
	비정기직종사자	-246.447(-.309)***	.243(.000)	1634.9(.031)***	-.243(-.001)	-.009(-.035)***	30.530(.047)***
주거지 (기준:서울)	광역시	-46.308(-.054***	5.183(.007)**	-489.1(-.009)	-5.183(-.014)**	-.004(-.014)	-26.234(-.038)***
	기타도시	-35.286(-.044)***	3.612(.005)*	1103.9(.021)**	-3.612(-.011)*	-.003(-.011)	-20.403(-.032)***
주거상황 (기준:자가)	임차주택	-40.581(-.049)***	114.017(.160)***	-25307.4(-.457)***	-114.017(-.320)***	-.107(-.394)***	160.822(.239)***
	사택	-38.003(-.011)*	81.414(.028)***	-20050.4(-.008)***	-81.414(-.056)***	-.076(-.068)***	102.073(.037)***
	무상(배우자)	-129.376(-.132)***	94.856(.113)***	-23418.5(-.360)***	-94.856(-.227)***	-.091(-.285)***	139.667(.177)***
	무상(기타)	-85.807(-.105)***	114.391(.164))***	-22295.1(-.413)***	-114.391(-.329)***	-.105(-.397)***	148.960(.227)***
가족공동 신청여부 (기준:아니오)	예	-29.123(-.018)***	17.584(.013.)***	536.0(.005)	-17.584(-.025)***	-.008(-.015)***	64.741(.049)***
소득수준		-	.794(.931)***	20.6(.310)***	.206(.482)***	-2.0E-5(-.062)***	-.282(-.350)***
총채무액		.003(.209)***	-.003(-.206)***	-	.003(.413)***	2.2E-6(.441)***	.004(.336)***
연체사유 (기준: 해당없음)	소득감소	-17.138(-.021)***	6.522(.010)***	5576.8(.105)***	-6.522(-.019)***	-.004(-.014)**	33.826(.053)***
	지출증가	-19.302(-.024)***	14.394(.021)***	586.6(.011)*	-14.394(-.042)***	-.015(-.058)***	59.255(.091)***
	관리능력부족	-3.987(-.004)	.200(.000)	7740.4(.123)***	-.200(-.000)	.000(.000)	43.541(.057)***
	기타사유	-14.756(-.013)***	9.756(.010)***	2397.5(.032)***	-9.756(-.021)***	-.009(-.026)***	55.598(.062)***
	상수	868.451***	-75.329***	37121.6***	75.329***	.298	156.426***
	F값	1249.609***	11248.232***	304.718***	1614.331***	548.024***	361.378***
	수정 R^2	.431	.876	.155	.504	.256	.185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이 크면 생계비도 증가하는 것이다. 총채무액은 그 다음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채무액이 클수록 생계비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40대의 경우, 남성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기혼인 경우, 광역시나 기타도시 거주자의 경우, 자가 이외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공동신청을 한 경우 생계비수준은 더 커지는 경향이 있었다.

지출증가가 연체발생사유인 경우 생계비수준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감소나 기타사유로 인해 연체를 경험한 경우에도 생계비수준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관리능력이 부족하여 연체한 경우는 생계비수준이 늘거나 감소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3) 총채무액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신청자의 총채무액에는 모든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15.5%이다. 주거상황과 소득수준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다. 여타의 주거상황보다도 자가 거주자의 총채무액이 더 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채무액도 더 커지는 경향이었다. 이는 경제적 여력이 있는 경우 채무활용도가 더 커짐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와 더불어 채무불이행의 위험도 더 커짐을 보여주는 것이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총채무액이 높아지는 것도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50대, 여성의 경우, 기혼보다는 미혼이나 이혼, 사별의 경우, 급여소득자보다는 자영업자나 비정기직 종사자의 경우, 기타

도시 거주자의 경우 총채무액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t-test의 결과에서는 총채무액이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었는데,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는 여성의 총채무액이 더 컸다. 즉 소득이나 여타의 변인을 통제하면 여성의 채무액이 더 큼을 보여준다.

네 가지 연체사유 모두 채무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중 관리능력의 부족이 채무액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관리능력의 부족은 소득이나 생계비감소 등에는 작용하지 않으나 채무액의 증가를 가져오는 중요한 연체사유인 것이다. 소득감소, 기타사유 및 지출증가도 채무액의 증가를 가져오는 연체사유이다.

(4) 월상환가능액

월상환가능액에 대해서는 직업과 관리능력부족 이외의 모든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50.4%로 높은 편이었다. 월상환가능액은 역시 소득과 총채무액의 영향이 가장 크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총채무액이 더 클수록 월상환가능액이 더 커진다. 이는 소득수준이 높으면 상환가능액도 당연히 커지는 부분도 있지만, 매월 더 많이 상환하려고 하기 때문일 것이다. 소득수준이 통제된 상태에서 총채무액이 커지면 매월 더 많은 금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상황의 영향도 비교적 큰 편인데, 자가 거주자의 월상환가능액이 가장 크다. 이는 자가거주자의 경우 임대료 등을 포함한 생계비가 덜 소요되기 때문일 것이다. 60대 이상인 경우, 여성의 경우, 대학교 졸업자의 경우, 미혼이나 기타인 경우, 서울거주자인 경우, 가족공동신청자가 아닌 경우 월상환가능액은 더 커지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총채무액에서와 마찬가지도 소득이나 총채무액 등이 통제된 상태에서는 여성의 월상환가능액이 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 소득부족분에 대해 지원을 받는 경우가 더 많고 생계비지출이 상대적으로 낮아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이다.

연체사유 중에서는 지출증가, 기타사유, 소득감소가 월상환가능액과 관련이 있었다. 즉 각사유가 존재한 경우 월상환가능액은 더 작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지출증가의 원인이 존재하면 월상환에 쓰일 금액은 줄어들었다. 반면 관리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경우는 월상환액이 더 줄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5) 월부채부담

월부채부담에는 주거지와 관리능력의 부족을 제외한 모든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채무액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어, 총채무액이 클수록 월부채부담도 커지고 있다. 주거상황의 영향도 상대적으로 커서 자가 거주자의 경우 월부채부담이 가장 큰 편이었다. 총채무액이 통제된 상태에서 자가 거주자의 부채부담이 더 큰 것은 예상 밖의 결과이다. 한편 소득은 월부채부담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기대한 것만큼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월부채부담은 커진다.

60대 이상인 경우, 여성인 경우, 대학교 졸업자인 경우, 미혼인 경우, 급여소득자인 경우, 가족공동신청자가 아닌 경우 월부채부담이 더 커지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소득증가나 지출증가, 기타사유 등의 연체사유의 존재는 월부채부담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유로 연체를 한 경우 오히려 월부채부담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과 총채무액이 통제된 상태에서는 이러한 사유는 생계비를 증가시킴으로써 월상환가능액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단기부채부담인 월부채부담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6) 추정상환개월수

추정상환개월수에는 모든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역시 소득과 총채무액이다. 소득이 증가하면 추정상환개월수는 감소하고, 총채무액이 증가하면 추정상환개월수도 증가한다. 소득이나 총채무액은 단기부채부담과 장기부채부담에 거의 동일한 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육수준의 경우도 대학교 졸업자의 경우 단기, 장기부채부담이 모두 크다.

반면, 연령은 단기부채부담과 장기부채부담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이 다르다. 40대, 30대, 50대의 추정상환개월수가 길게 나타나고 있다. 즉 단기부채부담이 월부채부담은 60대이상의 경우 더 높으나 장기부채부담인 추정상환개월수의 경우는 60대가 가장 짧아 단기와 장기의 부채부담에 대한 연령의 효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성별, 직업, 주거상황, 가족공동신청여부에도 적용된다. 남성의 경우 단기부채부담은 작으나 장기부채부담은 더 크고, 급여소득자와 자가 거주자의 경우는 단기부채부담은 더 크지만 장기부채부담은 더 작다.

모든 연체사유는 추정상환개월수를 증가시키고 있다. 소득이 감소하거나 지출이 증가하거나 관리능력이 부족하거나 기타사유로 인해 연체를 한 경우 단기부채부담은 오히려 작거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었는데, 장기부채부담은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2007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41,355명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자의 특성과 재무상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은 구하기 매우 어려운 아주 소중한 자료로, 소득이 없는 자 등 본 연구의 목적에 맞지 않는 일부대상을 제외하고는 동일기간동안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프로그램에 신청하여 지원이 확정된 풀 샘플(full sample)이다.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여 그들의 특성과 소득, 생계비수준 및 총채무액, 월상환가능액, 월부채부담 및 추정상환개월수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는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30~40대, 남성, 고등학교 졸업자, 기혼, 비정기직 종사자, 무상거주자, 기타지역거주자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둘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신청자의 연체발생사유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수의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중 기본생계비의 증가나 의료비, 교육비의 증가 등 지출증가로 인하여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59.7%로 가장 빈번하였다. 소득감소가 연체사유가 되는 경우도 53.7%로 과반수이상에서 소득감소가 연체사유였다. 소득감소 중 가장 큰 사유는 사업소득의 감소였다. 개인 간 금전거래를 포함하는 관리능력의 부족은 23%가, 이혼이나 재해, 사고 및 기타사유도 15.3%가 연체사유로 응답하였다. 단독사유로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는 39.2%였고, 나머지는 복합사유로 인하여 연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관리능력부족 보다는 생계비증가나 소득감소와 같은 경제적인 이유로 연체가 발생하여 금융채무불이행에 이르는 것이 다수로 채무불이행문제는 경제적 지원이 우선시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취하는 지원방법은 주로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변제기유예, 채무감면 등을 통한 채무조정을 통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를 돕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보장될 때 유효한 방법이다. 생계비 증가나 소득감소로 인해 신용불량에 이른 경우 기본적으로는 소득증가나 생계비가 감소되어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취업알선을 일부 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이용률은 매우 낮고 취업알선이 주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를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소득증진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출조정과 같은 지출관리나 개인 간 금전거래 시 주의해야 하는 능력 등의 향상도 채무불이행의 예방과 해결에 유용하다. 신용관리교육에 대한 지속적이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연령, 성별, 교육수준, 혼인상태, 직업, 주거지, 주거상황 및 가족공동신청여부는 연체사유와 연체사유 개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각각의 연체사유별로 변인의 영향력과 방향은 다소 다르다. 예를 들면 소득감소는 40대, 지출증가는 20대, 관리능력은 60대 이후인 경우 연체사유로 응답할 확률이 더 높았다. 이는 연령별로 서로 다른 이유로 연체에 이르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신용회복지원방법이나 연체예방방법은 연령별로 차별화되어 실시되는 것이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제언은 남성의 경우는 소득감소, 여성의 경우는 지출증가나 관리능력의 부족, 기혼의 경우는 소득감소 및 지출증가, 미혼의 경우는 관리능력의 부족 등이 더 큰 이유인 것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넷째, 예상했듯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신청자의 소득수준과 생계비수준은 아주 낮은 편이다. 그러나 예측보다 그 수준이 더욱 낮아서, 월상환가능액 규모도 매우 작고, 이로 인해 지나치게 오랜 기간 빚을 갚아야 하며, 신용회복지원 대상 채무가 아니 다른 채무로 인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음이 드러났다. 즉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최장상환기간은 96개월인데, 추정상환개월수는 이보다 훨씬 긴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는 현재의 신용회복지원시스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회복과정에 있더라도 잠재적인 문제를 내포한 경우가 많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의 불이행가능성과 결국 파산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신용회복프로그램에서 낙오가 되면 그 동안 보류되었던 이자가 연체이자로 적용되어 원금과 함께 모두 상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볼 때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자신의 재무상태에 비하여 부채의 규모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이유중의 하나는 빚을 갚으려는 의지, 경력에 오점을 남기지 않으려는 의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보전, 보증인에 대한 책임의식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수준의 생활을 8년 이상 지속하는 것은 매우 비참한 일이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제도와 연계하여 적절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시행할 때 항상 제기되고 있는 문제인 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 즉 도덕적 해이문제는 적절한 제도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신용상담이나 신용관리교육을 통하여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연령, 성별, 교육수준, 혼인상태, 직업, 주거지, 주거상황, 가족공동신청여부(및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 생계비, 총채무액, 월상환가능액, 월부채부담 및 추정상환개월수가 서로 다랐다. 또한 이러한 변수가 미치는 영향은 회귀분석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었다. 일부 변인의 경우 분산분석 및 t-test의 결과와 다른 변인을 통제한 중회귀분석의 연구결과와 상반되게 나온 부분도 있지만, 채무조정신청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영향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체사유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서로 다른 연체사유를 경험하면 결과적으로 현재의 소득수준, 생계비수준 및 채무상태도 달라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증가전략이나 지출감소전략, 채무감면전략, 채무상환기간의 조정전략 등 다양한 신용회복지원방법은 채무조정신청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연체사유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 또는 조합적으로 적용될 때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채무감면과 더불어 부업알선 등을 통한 소득증가전략은 추정상환개월수를 줄이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또한 채무조정신청자의 소득증가 전략은 여성에게 특히 필요하고, 월상환가능액은 유상의 임차주택 거주자의 경우 매우 적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밖에 관리능력의 부족은 총채무액과 추정상환개월수를 증대시키는 중요한 연체사유임을 고려할 때 개인 간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제공 및 교육 등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신청자를 대상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을 위한 바람직한 신용회복지원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신청자는 여러 가지 채무조정방법 중의 하나인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하는 자이기 때문에 다른 채무조정방법을 이용하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나 채무문제를 경험하고 있어서 채무조정방법을 이용하지 않는 자와는 성격이 다를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자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 비교가 가능하다면 보다 의미 있는 자료를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난도(1998). 소비자파산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파산상담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한국소비자학회 1998년도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김덕한 (2003). 나는 신용카드 빚 해결사. **주간조선, 1750호**.

김창미・김영신(2005). 대학생소비자의 신용카드 사용행동에 대한 인과분석 : 현금서비스 사용행동과 연체행동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77-91.

박종현(2003). 신용불량자 문제와 그 대응방향 -"채무자 우호적 파산제도"의 정비-. **응용경제 5(3),** 181-211.

부동호(2004). 이혼율 산정방식과 우리나라의 이혼율. 법원행정처.

서병호(2006). 개인파산의 현황과 시사점. **금융연구원 주간 금융브리프, 16(7),** 12-13.

신용회복위원회(2003). **능력 있는 재무상담사.**

신용회복위원회(2007). 2007년 2월중 신용회복위원회 활동실적.

유경원(2006). 우리나라 개인파산의 결정요인 분석과 시사점.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경제분석, 12(3),** 157-184.

이기춘・박근주(1997). 소비자신용 연체행동에 대한 관련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3),** 139-151.

이은영・허은정(2005). 부채가계의 연체행동 및 관련요인 분석. **소비자학연구, 16(1),** 179-194.

임대봉・이병완(2005). 신용불량자 문제의 요인분석. **200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1-22.

재정경제부(2004). 신용불량자 현황 및 대응방안.

조혜진・최현자(2004). 소비자의 신용과다사용 문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17(2),** 155-178.

최공필・이병윤・이명활・이건범(2004). **신용불량자 급증의 원인과 대책.** 한국금융연구원.

최현자 ・조혜진(2008). 다중연체자의 채무재조정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19(1),** 25-46.

통계청(2007). 2007년 가계 수지 동향.

한국은행(2007). 2007년 가계신용동향.

한국은행(2008). 1분기 중 자금순환동향.

허경옥(1999). 우리나라 소비자 파산제도의 효과적 운영방안에 관한 고찰. **소비자학연구, 10(3),** 1-21.

Fay, S., E. Hurst & M.J. White(2002). The Household Bankruptcy Decis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June,** 706-718.

Gross, D. & N. Soules(2002). An Empirical Analysis of Personal Bankruptcy, and Delinquency. **Review of Financial Studies, 15,** 319-147.

Mohon, R. (1999). **Stewardship Ethics in Debt Management.** MA : Kluwer Academic Publishers.

Waddell, F.G.(1999). 김경자 등 역. **고객관리를 위한 재무상담.** 시그마프레스.

□ 접 수 일 : 2008년 07월 17일
□ 심 사 일 : 2008년 09월 29일
□ 심사완료일 : 2008년 10월 21일